

##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교 검토

남인순의원안	한지아 의원안	검 토 의 견
<p>제1조의2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지도 또는 처방·의뢰에 따라--- ----- -----.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(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·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.</u></p>	<p>현행과 같음</p> <p>현행과 같음</p> <p>제2조(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의2(의료기사에 대한 원격지도)</p> <p>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의료기사에게 유무선 통신, 화상통신,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도(이하 “원격지도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</p> <p>② 의료기사는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원격지도를 받아 그 업무를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.</p> <p>③ 원격지도의 대상 업무·환자의 범위, 방법, 의료기사가 원격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와 그 밖에 원격지도의 실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두 안을 비교하여 보면 의료기사 및 수요자 입장과 의사협회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.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원격지도와 처방과 의뢰이다.</p> <p>원격지도는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해, 화상을 통한 의사의 실시간 지도를 의무화하고 있다. 이는 의사의 처방과 의뢰를 바탕으로 판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 업무를 수행해 온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.</p> <p>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를 기다려야 하므로 방문의료현장에서 즉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.</p> <p>따라서 의료기사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‘지도’를 ‘처방 또는 의뢰’로 전환하는 진정한 민생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.</p>